

정규직 전환 지원·위라벨일자리(소정근로시간단축제) 장려금의 임금 산정 기준  
(제15조제2항제2호가목, 제15조제2항제3호가목(4) 관련)

<p>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</p>	<p>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, 각종 수당(식비, 교통비 등)이 포함 다만,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(시간외근로수당, 연차수당 등) 및 실비변상적 금품(출장비, 일·숙직비 등)은 제외</p>
<p>소정근로시간 단축 전·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임금 기준</p>	<p>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, 각종 수당(식비, 교통비 등)이 포함 다만,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(시간외근로수당, 연차수당 등) 및 실비변상적 금품(출장비, 일·숙직비 등)은 제외</p> <p>※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</p> <p>※ 육아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</p>